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도경찰청 연합협의회 설립 허용〉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57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범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2. 18.
3. 회 부 일 : 2025.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전국 경찰관서에 설립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는 자신들을 대표하는 전국단위의 연합협의회를 경찰청 본부에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음.

그런데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조직이 18개의 시·도경찰청과 그 산하의 경찰서 259개소, 지구대 630개소, 파출소 1,415개소 등으로 전국에 걸쳐 분산되어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청 본청에 두는 하나의 연합협의만으로는 전체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충을 처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개의 시·도 경찰청에 연합협의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시·도 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자신의 처우개선 및 권익 보호 등을 시·도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18개 시·도경찰청마다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시·도경찰청 소속 직장협의회가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시·도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연합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조의2(연합협의회) ① ----- ----- ----- ----- .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 <u>중앙행정기관(경찰청은 제외한다)</u> ----- --
3. (생략) <신설>	3. (현행과 같음)
	4. <u>경찰청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경찰청</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 생활·현장 밀착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¹⁾ 기관 단위로 구성하는 대표기구로서, 공무원노동조합과 달리 단체 교섭·단체협약권은 인정되지 아니함.²⁾

현행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각 1개의 직장협의회(이하 “직협”)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³⁾ 시행령에서는 직협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를 “기관장이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음.⁴⁾

한편, 경찰공무원은 2019년 법 개정으로 2020년 6월부터 직협을 설립·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가입은 금지되어 있어 직협을 통한 협의만 가능한 상황임.⁵⁾⁶⁾

1)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무원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교섭·단체협약 체결권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공무원직협법」은 근무조건 등에 관한 협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단체교섭·협약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3)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4)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5) 공무원 노동기본법 허용 연혁 : 외환위기 이후 노사정 합의에 따라 공무원 노동기본권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① 1999년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이 허용되고, ② 2006년부터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되었으며, ③ 2020년에는 경찰·소방의 직장협의회 설립·가입이 가능해지고, ④ 2021~2022년에는 직협·노조 모두에서 가입 직급 제한 완화·퇴직자 및 소방공무원 가입 허용·연합협의회 설립 허용 등으로 대상과 조직형태가 한층 확대되었음(자료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법 개정으로, 개별 기관 단위 직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급기관과의 협의 및 공통 현안을 다루기 위하여 상위 대표체인 ‘연합협의회’ 제도가 도입되었고,⁷⁾ 경찰 분야에서는 이를 근거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하는 창구가 마련되었음.

다만, 경찰조직은 약 13만 명(2024년 정원 기준) 규모의 경찰인력이 18개 시·도경찰청과 그 산하의 경찰청·지구대·파출소 등 2,300여 개 관서로 분산된 다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바,

단일한 전국단위 연합협의회만으로는 시·도별로 상이한 치안 여건과 근무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시·도단위 수준의 연합협의회가 부재하다는 점이 현행 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 연도별 변화 》



(자료: 2024 경찰통계연보)

제6조(가입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3.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7) **제2조의2(연합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 단위 연합협의회를 신설함으로써, 전국단위 연합협의회와 개별 기관 직협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 대표층’을 마련하고,

시·도경찰청 산하 여러 직협의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시·도경찰청장과 협의하는 공식 창구를 둠으로써, 국가-시·도-개별 관서로 이어지는 3단계 대표 체계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보임.

시·도경찰청 단위 연합협의회의 도입은 시·도별 치안수요 및 근무환경의 차이를 제도적으로 수렴하고, 인력·장비 배치, 교대·당직 운영, 관할·보상체계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맞춤형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시·도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설립·가입이 제한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여건·조직문화 개선, 나아가 치안서비스의 질과 국민 신뢰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가 동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에 한하여 전국단위 연합협의회와 시·도단위 연합협의회를 별도로 허용하는 것이 다른 국가기관 및 소방 등 다른 공무원 직군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전체 조문 체계를 종합할 때, 경찰청에는 전국단위 연합협의회 1개를, 각 시·도경찰청에는 각 1개의 연합협의회를 두는 체계를 예정한 것으로 해석되나,

안 제2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제4호(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으로는 경찰청 본청 또는 특정 시·도경찰청 내에 복수의 연합협의회 설치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법 적용상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기관별 연합협의회 수를 ‘각 1개로 한다’는 취지를 법문에 명확히 반영하거나, 단서조문의 표현을 조정하는 등 입법기술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시·도경찰청 연합협의회가 허용될 경우 동일 기관 내 지역별로 상이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경찰청 연합협의회와의 권한·역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사·예산권자와의 협의를 전제로 한 연합협의회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의 독자적 결정권이 제한적이어서 시·도경찰청 연합협의회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연합협의회 구성원 간 이해충돌로 경찰조직 내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38